|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6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이 2010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10년 10월 28일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대외민사관계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고 대외민사분쟁을 합리하게 해결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본 법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기타 법률이 대외민사관계 법률적용에 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본 법과 기타 법률에 대외민사관계 법률적용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대외민사관계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  **제3조** 당사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하고자 명시할 수 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에 대외민사관계에 관한 강제성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강제성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제5조** 외국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중이익을 손해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 대외민사관계에 외국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국가가 부동한 구역에서 부동한 법률을 실시할 경우 당해 대외민사관계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 소송시효는 관련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해야 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대외민사관계의 확정은 법원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9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외국법률에는 당해 국가의 법률 적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외국법률은 인민법원, 중재기구 혹은 행정기관이 확실하게 조회해야 한다. 당사자가 외국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법률을 조회할 수 없거나 혹은 당해 국가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민사주체**  **제11조**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2조**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은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자연인이 민사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일상거주지 법률에 의거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으나, 행위발생지 법률에 의거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발생지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혼인가정, 상속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실종 혹은 사망 선고는 자연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 법인 및 분지기구의 민사권리능력, 민사행위능력, 조직기구, 주주의 권리의무 등 사항은 등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요 영업지와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요 영업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의 일상거주지가 주요 영업지로 된다.  **제15조** 인격권의 내용은 권리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 대리는 대리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민사관계는 대리관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위탁대리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 당사자는 신탁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탁재산소재지의 법률 혹은 신탁관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기구소재지의 법률 혹은 중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 본 법에 따라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나 자연인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소유할 경우에는 일상거주지가 있는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모든 국적국가에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자연인이 국적이 없거나 혹은 국적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 본 법에 따라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나 자연인의 일상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혼인가정**  **제21조** 결혼조건은 당사자의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국적이 없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혹은 국적국가의 결혼여부에 따라 결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2조** 결혼수속은 결혼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에 부합되기만 하면 전부 유효하다.  **제23조** 부부인신관계는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4조** 부부재산관계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국적국가의 법률 혹은 주요재산 소재지의 법률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5조** 부모자녀의 인신, 재산관계는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 중에서 약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6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법률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 거주지가 없을 경우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국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혼절차를 밟는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 소송이혼은 법원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8조** 입양조건과 수속은 입양인과 피입양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입양의 효력은 입양 시의 입양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입양관계의 해제는 입양 시 피입양인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법원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9조** 부양은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국적국가의 법률 혹은 주요 재산소재지의 법률 중에서 피부양인 권익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0조** 후견은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 중에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장 상 속**  **제31조**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단, 부동산에 관한 법정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2조** 유언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혹은 사망 시의 일상거주지 법률, 국적국가의 법률 혹은 유언행위지의 법률에 부합되기만 하면 전부 성립된다.  **제33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혹은 사망 시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 유산관리 등 사항은 유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5조** 상속인이 없는 유산의 귀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유산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5장 물 권**  **제36조** 부동산 물권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7조** 당사자는 동산물권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사실 발생 시의 동산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38조** 당사자는 운송 중의 동산물권 변경에 적용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송목적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9조**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의 권리 실현지 법률 혹은 기타 유가증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  **제40조** 권리질권은 질권설정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장 채 권**  **제41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이 당해 계약의 특징을 제일 잘 구현한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당해 계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제42조**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제공지의 법률을 선택하였거나 혹은 경영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주지에서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 서비스 제공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3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의 근로지 법률을 적용한다. 노동자의 근로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채용단위의 주요영업지 법률을 적용한다. 노무파견은 노무파견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 권리침해책임은 권리침해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당사자가 공동 일상거주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제품책임은 피권리침해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피권리침해인이 권리침해인의 주요영업지 법률, 손해발생지 법률을 선택하였거나 권리침해인이 피권리침해인의 일상거주지에서 관련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침해인의 주요 영업지 법률 혹은 손해발생지의 법률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46조** 인터넷 혹은 기타 방식으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피권리침해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47조** 부당이익, 사무관리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선택한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공동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 이익, 사무관리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7장 지적재산권**  **제48조**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내용은 보호 신청대상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9조**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양도와 허가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법 중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책임은 보호 신청대상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당사자는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후 법원소재지의 법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제8장 부 칙**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146조, 제147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36조가 본 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52조** 본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  **法律适用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三十六号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七次会议于2010年10月28日通过，现予公布，自2011年4月1日起施行。  中华共和国主席　胡锦涛  2010年10月28日  **第一章 一般规定**  **第一条** 为了明确涉外民事关系的法律适用，合理解决涉外民事争议，维护当事人的合法权益，制定本法。  **第二条** 涉外民事关系适用的法律，依照本法确定。其他法律对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另有特别规定的，依照其规定。  本法和其他法律对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没有规定的，适用与该涉外民事关系有最密切联系的法律。  **第三条** 当事人依照法律规定可以明示选择涉外民事关系适用的法律。  **第四条** 中华人民共和国法律对涉外民事关系有强制性规定的，直接适用该强制性规定。  **第五条** 外国法律的适用将损害中华人民共和国社会公共利益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  **第六条** 涉外民事关系适用外国法律，该国不同区域实施不同法律的，适用与该涉外民事关系有最密切联系区域的法律。  **第七条** 诉讼时效，适用相关涉外民事关系应当适用的法律。  **第八条** 涉外民事关系的定性，适用法院地法律。  **第九条** 涉外民事关系适用的外国法律，不包括该国的法律适用法。  **第十条** 涉外民事关系适用的外国法律，由人民法院、仲裁机构或者行政机  关查明。当事人选择适用外国法律的，应当提供该国法律。  不能查明外国法律或者该国法律没有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  **第二章 民事主体**  **第十一条** 自然人的民事权利能力，适用经常居所地法律。  **第十二条** 自然人的民事行为能力，适用经常居所地法律。  自然人从事民事活动，依照经常居所地法律为无民事行为能力，依照行为地法律为有民事行为能力的，适用行为地法律，但涉及婚姻家庭、继承的除外。  **第十三条** 宣告失踪或者宣告死亡，适用自然人经常居所地法律。  **第十四条** 法人及其分支机构的民事权利能力、民事行为能力、组织机构、股东权利义务等事项，适用登记地法律。  法人的主营业地与登记地不一致的，可以适用主营业地法律。法人的经常居所地，为其主营业地。  **第十五条** 人格权的内容，适用权利人经常居所地法律。  **第十六条** 代理适用代理行为地法律，但被代理人与代理人的民事关系，适用代理关系发生地法律。  当事人可以协议选择委托代理适用的法律。  **第十七条** 当事人可以协议选择信托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信托财产所在地法律或者信托关系发生地法律。  **第十八条** 当事人可以协议选择仲裁协议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仲裁机构所在地法律或者仲裁地法律。  **第十九条** 依照本法适用国籍国法律，自然人具有两个以上国籍的，适用有经常居所的国籍国法律；在所有国籍国均无经常居所的，适用与其有最密切联系的国籍国法律。自然人无国籍或者国籍不明的，适用其经常居所地法律。  **第二十条** 依照本法适用经常居所地法律，自然人经常居所地不明的，适用其现在居所地法律。  **第三章 婚姻家庭**  **第二十一条** 结婚条件，适用当事人共同经常居所地法律；没有共同经常居所地的，适用共同国籍国法律；没有共同国籍，在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或者国籍国缔结婚姻的，适用婚姻缔结地法律。  **第二十二条** 结婚手续，符合婚姻缔结地法律、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或者国籍国法律的，均为有效。  **第二十三条** 夫妻人身关系，适用共同经常居所地法律；没有共同经常居所地的，适用共同国籍国法律。  **第二十四条** 夫妻财产关系，当事人可以协议选择适用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国籍国法律或者主要财产所在地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共同经常居所地法律；没有共同经常居所地的，适用共同国籍国法律。  **第二十五条** 父母子女人身、财产关系，适用共同经常居所地法律；没有共同经常居所地的，适用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或者国籍国法律中有利于保护弱者权益的法律。  **第二十六条** 协议离婚，当事人可以协议选择适用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或者国籍国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共同经常居所地法律；没有共同经常居所地的，适用共同国籍国法律；没有共同国籍的，适用办理离婚手续机构所在地法律。  **第二十七条** 诉讼离婚，适用法院地法律。  **第二十八条** 收养的条件和手续，适用收养人和被收养人经常居所地法律。收养的效力，适用收养时收养人经常居所地法律。收养关系的解除，适用收养时被收养人经常居所地法律或者法院地法律。  **第二十九条** 扶养，适用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国籍国法律或者主要财产所在地法律中有利于保护被扶养人权益的法律。  **第三十条** 监护，适用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或者国籍国法律中有利于保护被监护人权益的法律。  **第四章 继 承**  **第三十一条** 法定继承，适用被继承人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但不动产法定继承，适用不动产所在地法律。  **第三十二条** 遗嘱方式，符合遗嘱人立遗嘱时或者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国籍国法律或者遗嘱行为地法律的，遗嘱均为成立。  **第三十三条** 遗嘱效力，适用遗嘱人立遗嘱时或者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或者国籍国法律。  **第三十四条** 遗产管理等事项，适用遗产所在地法律。  **第三十五条** 无人继承遗产的归属，适用被继承人死亡时遗产所在地法律。  **第五章 物 权**  **第三十六条** 不动产物权，适用不动产所在地法律。  **第三十七条** 当事人可以协议选择动产物权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法律事实发生时动产所在地法律。  **第三十八条** 当事人可以协议选择运输中动产物权发生变更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运输目的地法律。  **第三十九条** 有价证券，适用有价证券权利实现地法律或者其他与该有价证券有最密切联系的法律。  **第四十条** 权利质权，适用质权设立地法律。  **第六章 债 权**  **第四十一条** 当事人可以协议选择合同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履行义务最能体现该合同特征的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或者其他与该合同有最密切联系的法律。  **第四十二条** 消费者合同，适用消费者经常居所地法律；消费者选择适用商品、服务提供地法律或者经营者在消费者经常居所地没有从事相关经营活动的，适用商品、服务提供地法律。  **第四十三条** 劳动合同，适用劳动者工作地法律；难以确定劳动者工作地的，适用用人单位主营业地法律。劳务派遣，可以适用劳务派出地法律。  **第四十四条** 侵权责任，适用侵权行为地法律，但当事人有共同经常居所地的，适用共同经常居所地法律。侵权行为发生后，当事人协议选择适用法律的，按照其协议。  **第四十五条** 产品责任，适用被侵权人经常居所地法律；被侵权人选择适用侵权人主营业地法律、损害发生地法律的，或者侵权人在被侵权人经常居所地没有从事相关经营活动的，适用侵权人主营业地法律或者损害发生地法律。  **第四十六条** 通过网络或者采用其他方式侵害姓名权、肖像权、名誉权、隐私权等人格权的，适用被侵权人经常居所地法律。  **第四十七条** 不当得利、无因管理，适用当事人协议选择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当事人共同经常居所地法律；没有共同经常居所地的，适用不当得利、无因管理发生地法律。  **第七章 知识产权**  **第四十八条** 知识产权的归属和内容，适用被请求保护地法律。  **第四十九条** 当事人可以协议选择知识产权转让和许可使用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本法对合同的有关规定。  **第五十条** 知识产权的侵权责任，适用被请求保护地法律，当事人也可以在侵权行为发生后协议选择适用法院地法律。  **第八章 附 则**  **第五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四十六条、第一百四十七条，《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第三十六条，与本法的规定不一致的，适用本法。  **第五十二条** 本法自2011年4月1日起施行。 |